

의안번호	2205911
의 퇴 인	한정애의원
회 답 일	2024. 11. 29.
추계번호	24B54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4조(기후위기 대응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기금 및 조세감면 등이 온실가스의 배출 및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u>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도를 실시</u>하여야 함(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도를 제8조제1항에 따른 <u>중장기감축목표</u>,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u>부문별감축목표</u>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u>연도별감축목표</u>와 유기적·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함(제2항) ※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유기적·체계적으로 실시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4조(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도)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도(안 제24조)

- 개정안은 국가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에 대해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함으로써 각 예산사업의 온실가스 배출효과 등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폭넓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재정법」 1)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신설 및 시행(2022.1.1)됨에 따라 제도 운영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관련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환경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관련 예산 현황: 2022~2025년(안)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2	2023	2024	2025(안)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6331-30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1,020	1,700	700	1,000

주: 1. 기후대응기금의 세부사업인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6331-301)의 내역사업임
2. 2024년도 예산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안착에 따른 일부 비용 감소 등을 고려하여 감액
- 예산서 작성검토 및 감축 기여도 평가: 400백만원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확대 방안 연구: 300백만원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 환경부에 따르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²⁾의 명칭을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할 경우, 도로·건설·산업단지 등 온실가스 배출사업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다루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개정안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사업의 내용 및 범위가 확정적이지 않아 이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 비용을 예측하기가 곤란하여

- 1)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정부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적정 집행여부를 평가·환류하는 제도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가 곤란함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부문별·연도별 목표 설정, 배출권거래제, 국제감축사업 관련 자료는 아래 참고자료를 참고할 수 있음

※ [참고자료 1]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부문별·연도별 목표 설정

※ [참고자료 2] 배출권거래제 개요

※ [참고자료 3] 국제감축사업 개요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부문별·연도별 목표 설정

(환경부 제출자료)

□ 부문별 감축목표

(단위: 백만톤 CO₂eq, 괄호는 2018년 대비 감축률)

구분	부문	2018 실적	2030 목표		주요 감축수단
			기존 NDC (‘21.10)	수정 NDC (‘23.3)	
배출량(합계)		727.6	436.6 (40.0%)	436.6 (40.0%)	
배출	전환	269.6	149.9 (44.4%)	145.9 (45.9%)1)	－ 전원믹스 재구성(석탄↓, 재생e↑ 등) － 전력시장 개선 등 수요 효율화
	산업	260.5	222.6 (14.5%)	230.7 (11.4%)	－ 공정 효율화, 연·원료 전환 －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통한 자발적 인 감축활동 유도
	건물	52.1	35.0 (32.8%)	35.0 (32.8%)	－ 제로에너지건축, 그린리모델링 － 건물 효율개선
	수송	98.1	61.0 (37.8%)	61.0 (37.8%)	－ 무공해차·선박 보급 － 내연차 기준강화, 주행거리 감축
	농축 수산	24.7	18.0 (27.1%)	18.0 (27.1%)	－ 저탄소 농축산업 기술 보급 － 설비 효율화·저탄소화
	폐기물	17.1	9.1 (46.8%)	9.1 (46.8%)	－ 폐기물 원천감량 －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수소	(－)	7.6	8.42)	－ 그린수소 실증 및 인프라 구축 － 수소 활용범위 확대
	탈루 등	5.6	3.9	3.9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3)	－26.7	－26.7	－ 산림·습지 보호·복원 － 도시숲 등 신규흡수원 확대
	CCUS	(－)	－10.3	－11.23)	－ 근거리법 제정 및 상용화 R&D － CCS 저장소 확보
	국제 감축	(－)	－33.5	－37.54)	－ 국외 감축활동 수행 후 크레딧 거래

※ 기준연도('18) 배출량은 총배출량 / '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 (총배출량 - 흡수·제거량)

1) 태양광, 수소 등 청정에너지 확대에 400만톤 추가 감축

2) 수소 수요량 최신화에 따른 공급량 확대 반영 (블루수소 +10.5만톤 → 온실가스 0.8백만톤↑)

3) 국내 CCS 잠재량 반영(0.8백만톤), CCU 실증경과 등을 고려한 확대(0.1백만톤)

4) 민간협력 사업 발굴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량 400만톤 확대

□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부문	2018 (기준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686.3*	633.9	625.1	617.6	602.9	585.0	560.6	529.5	436.6**
전환	269.6	223.2	218.4	215.8	211.8	203.6	189.9	173.7	145.9
산업	260.5	256.4	256.1	254.8	252.9	250.0	247.3	242.1	230.7
건물	52.1	47.6	47.0	46.0	44.5	42.5	40.2	37.5	35.0
수송	98.1	93.7	88.7	84.1	79.6	74.8	70.3	66.1	61.0
농축 수산	24.7	22.9	22.4	21.9	21.2	20.4	19.7	18.8	18.0
폐기물	17.1	15.1	14.7	14.1	13.3	12.5	11.4	10.3	9.1
수소	—	3.4	4.1	4.8	5.5	6.2	6.9	7.6	8.4
탈루 등	5.6	5.1	5.0	5.0	4.9	4.8	4.5	4.2	3.9
흡수원	-41.3	-33.5	-31.3	-28.9	-30.4	-29.1	-28.3	-27.6	-26.7
CCUS	—	—	—	—	-0.4	-0.7	-1.3	-3.2	-11.2

주 * 국제사회에 제출된 '18년 총 배출량은 727.6백만톤이나 순배출량 기준으로는 686.3백만톤이며, 모든 연도별 합계는 순배출량 기준(부문별 소수점 첫째자리 아래 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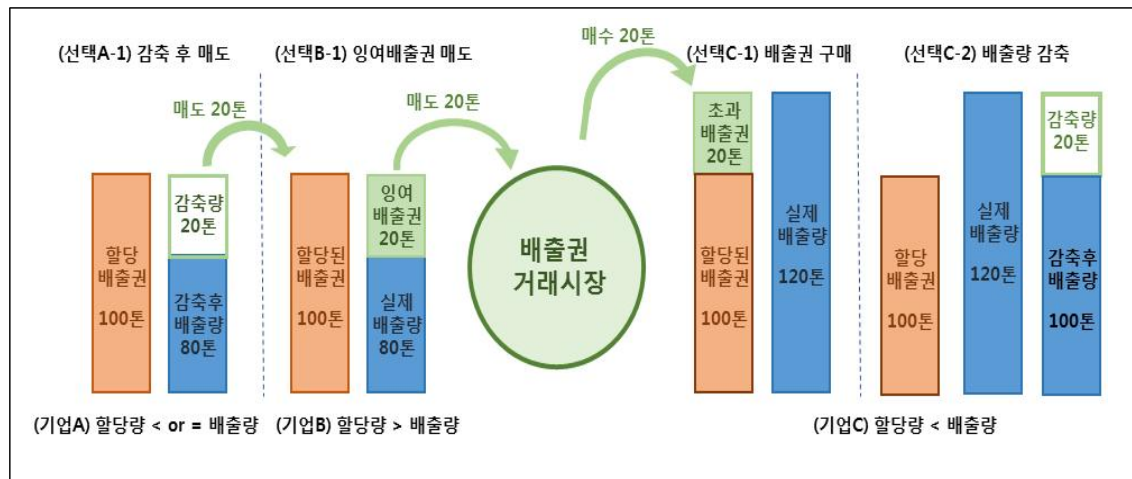
** 국제감축은 관련 국제기준 확정, 최초 활용시기('26년 예상)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목표를 설정할 예정으로 '30년 목표에만 반영

[참고자료 2] 배출권거래제 개요

(환경부 제출자료)

□ 제도 개요

- (할당) 정부는 매 계획기간*을 정하여 기준연도(할당년도 이전 3개년) 배출량 기준으로 기업에 배출권 사전 할당, 할당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 가능
* (1기) '15~'17, (2기) '18~'20, (3기) '21~'25
- (감축 및 거래) 여유기업은 온실가스 감축분 또는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고, 부족기업은 직접 감축하거나 부족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



- (배출권 정산) 기업은 해당 연도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다음해 8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 부족하게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재
*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42조] 부족 배출권량 × (전년도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 × 3)

□ 배출권 할당

(단위 : 백만톤)

구분	제1차 계획기간 ('15 ~ '17)	제2차 계획기간 ('18 ~ '20)	제3차 계획기간 ('21 ~ '25)
배출허용총량	1,704	1,777	3,048

- (유상할당 개시) 제1차 계획기간에는 전체 할당량을 무상으로 하였으나, 제2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자의 책임강화를 위해 유상할당 개시*
* 계획기간별 유상할당 비율: (2차) 3%, (3차) 10%

[참고자료 3] 국제감축사업 개요

(환경부 제출자료 및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참고)

□ 추진 배경

- 파리협정 제6조 메커니즘(6.2조·6.4조)에서 쉐 지구적 관점의 비용 효율적인 탄소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 메커니즘(감축실적 거래) 규정
* 탄소 배출의 기후변화 영향은 국가별로 같으나, 감축비용은 상이한 점에 착안
- 2030년 NDC 감축목표에서 '30년에 국외감축분 37.5백만톤(5.2%)을 정부 몫으로 설정, 정부 직접투자 및 민간기업 지원(선도구매)을 추진 필요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3년~계속
- (사업규모) '24년 23,550백만원
- (사업방식) 정부가 국내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사업비(설비 투자비, 운영비 등)를 투자하고, 확보된 감축실적을 정부가 획득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활용
- (지원내용) 타당성 조사비, 감축사업 설계 및 공사비 지원

[양자 협정 체결현황]

구 분	국 가
협정 체결 국가	베트남('21.5), 몽골('23.2), 가봉('23.5), 우즈베크('23.6), UAE('24.5), 모로코('24.6), 페루('24.6.), 라오스('24.10.)

자료: 외교부

□ 기대 효과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 탄소저감 기술을 가진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로 활용